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3368
------------	------

2025. 11. 24.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및 편성내역

(1) 운용총칙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이하 '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¹⁾에 의거하여 2002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 기금사업의 목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및 주택임대보증금 융자를 통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이며, 이를 위해 2026년도에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서울형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공공부문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천2백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1) 2002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제8조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 · 운용하여 오다가,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 운용되어왔음.

액 143억 7백만원 대비 56억 1천만원($\triangle 39.2\%$)이 감액되었음.

※ 연도별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5년도 말 조성액 ①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④=③+①)
	수 입 ②	지 출 ③	증감 ④=②-③	
14,306,521	5,281,424	10,895,480	$\triangle 5,614,056$	8,692,465

- 2026년도 기금의 재원은 자금 운용수입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209억 1천6백만원임.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6년도 말 조성액 ①	융자금 미회수채권 ②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③	총 조성규모 ④=①+②-③
8,692,465	12,224,000	0	20,916,465

(2)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계	19,588	
이 자 수 입	441	
융 자 금 회 수	4,750	이자포함
전 입 금	-	
기 타 수 입	90	
예 치 금 회 수	14,307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계	19,587	
비융자성사업비	7,215	서울형 주택바우처
융자성 사업비	3,680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융자, 전월세보증금 단기융자
예 치 금	8,692	연말 예금잔액

▶ 기금 수입계획

- 2026년도 기금 수입은 총 195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285억 8

천8백만원) 대비 90억원 감소하였음.

〈기금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A)	2025년(B)	증감 (C=A-B)	증감률(%)
합 계	19,588	28,588	△9,000	△31.5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441	558	△116	△20.8
융 자 금 회 수 이 자 수 입	250	250	-	-
그 외 수 입	90	80	10	12.5
민 간 융 자 금 회 수 수 입	4,500	6,334	△1,834	△29.0
통화금융기관융자금회수수입	-	450	△450	순감
예 치 금 회 수	14,307	20,916	△11,368	△46

▶ 기금 지출계획

- 기금사업은 총 2개(여유자금 예치 제외)이며,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서울형 주택바우처) 72억 1천5백만원²⁾,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로 36억 8천만원³⁾을 지출할 계획임.

〈기금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A)	2025년(B)	증감 (C=A-B)	증감률(%)
합 계	19,588	28,588	△9,000	△31.5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보조지급	7,215	8,631	△1,416	△16.4
서 울 형 주 택 바 우 처	7,215	8,631	△1,416	△16.4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3,680	5,650	△1,970	△34.9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융자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	3,680	5,200	△1,520	△29.2
전 월 세 보 증 금 순 환 기 금 운 용 (이 사 시 기 불 일 치 대 출)	-	450	△450	△100.0
여 유 자 금 예 치	8,692	14,307	△5,614	△39.2

2) 일반·아동바우처 41억 6천9백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 30억 4천6백만원

3)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20억 8천만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 16억 원

Ⅱ.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은정)

1. 총괄

-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의 지출총액은 전년도(285억 8천8백만원) 대비 31.5%(90억원) 감소한 195억 8천8백만원(붙임1. 참고)이며, 이는 크게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72억 1천5백만원)’과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36억 8천만원)’ 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됨.

2. 사업별 검토

①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별설명서 p.659, 기금운용계획안 p.202)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서울형 주택바우처)은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⁴⁾를 받지 않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월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일반 및 아동바우처’와,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의 임차료 보조를 위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포함함⁵⁾.

4)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임차 및 자가가구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임.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5년 대비 4.4%증가한 2026년 주거급여를 가내시한 바 있음.

▶ 가구원수별 지급상한액 증가
1인가구 : 352,000원('25년) → 369,000원('26년)
2인가구 : 395,000원('25년) → 414,000원('26년)
3인가구 : 470,000원('25년) → 492,000원('26년)
4인가구 : 545,000원('25년) → 571,000원('26년)
5인가구 : 564,000원('25년) → 591,000원('26년)
* '26년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 통보(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3838, '25.9.23)

- 서울시는 2026년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위해 72억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4%(14억 1천 6백만원) 감소된 규모임.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8,631,120	(x-) 8,631,120	(x-) 7,215,480	(x-) △1,415,640	(x-) △16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x-) 0	(x-) 0	(x-) 7,215,480	(x-) 7,215,480	(x-) 100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x-) 8,631,120	(x-) 8,631,120	(x-) 0	(x-) △8,631,120	(x-) △100

- 먼저, '일반·아동바우처'는 민간 주택 및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월세 일부를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원하는 비용자성 사업임.

<2025년 일반 및 아동바우처 사업개요>

○ 선정기준

- 주택기준: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임대보증금 1억 6천5백만원 이하
- 재산기준: 재산가액 2억원(금융재산 8천만원) 이하, 자동차 1대 이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중위소득 60%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4,838,883

※ 가구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바우처 추가 지급

○ 지원금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금 액	120,000원	130,000원	140,000원	150,000원	160,000원	170,000원
아 동	아동 1인당 60,000원					

5)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반지하 특정바우처'가 분리되어 기술되어 있으므로, 정책명을 일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음.

- 이 사업은 2025년도(47억 9천1백만원) 대비 약 13%(6억 2천1백만원) 감액된 41억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지원금(14만3천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지원기구의 연평균 감소율(9.74%)⁶⁾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일반·아동바우처 연도별 집행현황>

연도	지원 기구 (월평균)		예산현액	집행액 (누적)	집행율	지원금 (1인기준)
	가구수	감소율				
‘21년	4,097	–	5,000,000	4,478,490	89.5%	8만원(‘20.4월~)
‘22년	3,792	7.4%	4,800,000	4,372,454	91.0%	
‘23년	3,388	10.7%	4,800,000	3,892,065	81.0%	
‘24년	2,928	13.6%	4,800,000	3,333,475	69.4%	
‘25년 9월	2,715	7.3%	4,791,120	3,483,885	72.7%	12만원(‘25.1월~)

- 집행기관은 매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이 완화⁷⁾됨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일반·아동바우처 대상자가 감소되고 있다고 진단하여, ‘25년 1월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한 바 있음⁸⁾.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바우처 수급 대상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택가격·물가 상승등으로 주거부담이 커지는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을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 기구가 지상층으로 이주⁹⁾할 때 월세의 일부를 지원¹⁰⁾하는 사업으로, 전년도(38억 4천만원) 대비

6)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매년 월평균 지원 기구수의 감소율을 산출평균 한 값임.

7) 2023년 중위소득 47% → 2024년 중위소득 48%

8) 주택바우처 사업 개선 추진(2024.6.20.추진, 2025.1월 시행)

① 일반 바우처 지급금액 상향: 1인가구 기준 4만원 증액, 가구원 1인당 편차 ‘5천원’→‘1만원’ 증액
 ② 아동특정바우처 지급금액 상향: 아동 1인당 ‘4만원’→‘6만원’ 증액
 ③ 재산가액 상향: ‘1억6천만원(금융 6천5백)’→‘2억원원(금융 8천)’

9) 2022.8.9. 당시 서울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 이후 지상층 이주 기구에 한함.

약 21%(7억 9천4백만원) 감액된 30억 4천6백만원을 편성함.

<2025년 반지하 특정바우처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내 반지하 가구(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22.8.9.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2.8.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비정상거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 제외
 - ※ 2025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 ('22.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지원금액: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지원(최대 1,440만원)

(단위: 만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소득	359.8	547.7	762.6	857.8	903.1	973.3	1,043.5	1,113.7

- 이는 지난 1년간 누적 지원가구수의 월별 증가량이 감소(월 50가구 증가 → 10가구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집행기관은 그 사유를 “지원대상 선정 2년 후 자격조사 결과 서울시 밖으로의 전출 또는 기준소득 초과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집행기관의 설명을 바탕으로 볼 때, 반지하 거주가구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유도하는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이 지원기간 종료 이후 오히려 정책수혜자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이에 따른 수도권 유출 등 비자발적 주거이동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료됨.
- 따라서, 집행기관은 단순히 지원실적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기 수혜자들의 주거비 부담 변화 및 주거이동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10)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최대 1,440만원 지원

통해 지원기준 및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정책수혜자들의 주거안정성과 기존 생활권 내 거주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2024년 반지하 특정바우처 집행 실적>

24년도 월별 기구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46	791	848	916	967	995	1,027	1,068	1,087	1,096	1,110	1,123
월별 증가량	+45	+57	+68	+51	+28	+32	+41	+19	+9	+14	+13	

<2025년 반지하 특정바우처 집행실적 및 예상 집행액>

25년도 월별 기구수	기 집행액 (16억2천4백만원)							예상 집행액 (11억7천7백만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27	1,104	1,103	1,122	1,130	1,142	1,154	1,164	1,174	1,184	1,194	1,204
월별 증가량	-23	-1	+19	+8	+12	+12	→ 월별 가구 증가량: 평균 10가구					

②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사업별설명서 p.665, 기금운용계획안 p.202)

-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¹¹⁾는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¹²⁾ 입주예정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융자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와 쪽방·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 사업으로 구성됨¹³⁾.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는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50년 임대) 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1) 용어상 혼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명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50년 임대), 재개발임대주택

13) 서울시는 세부사업으로 2012년 9월부터 ‘이사시기 불일치 임차보증금 대출사업’을 금년 8월까지 시행했으나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 수령 전 퇴거를 기피하는 등의 사유로 최근 5년 간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25년 10월, 사업의 폐지를 결정하였음.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의 70%(최대 1천2백만원)를 융자해주는 사업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사업 개요>

- 지원대상: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영구임대·장기전세주택 제외)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5. 2001년 3월 14일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철거민
- 이자 및 상환방법: 연이율 2%로 10년간 균등분할상환
※ 기타 임대보증금 상한액(1,200만원) 및 대출금 관리 등은 서울시·서울주택시개발공사 별도 기준으로 정함

- 이 사업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30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융자금인 1천2백만원을 기준으로 총 3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26년은 그간 실적을 토대로 지원금액(1천2백만원 → 800만원) 및 가구 수(300가구 → 260가구)를 하향 조정하여 20억 1천만원을 편성함.

<최근 3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사업 실적>

(단위 : 원)

지원연도	지원가구	지원금액	지원평균
2024년	159	1,281,000,000	8,056,604
2023년	191	1,463,000,000	7,659,686
2022년	405	3,240,000,000	8,000,000
2022~2024 평균	252	1,994,666,667	7,905,430

-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의 불안정화 및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¹⁴⁾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저감을 위해 지원금액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는 쪽방, 고시원, 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정착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LH, SH) 및 민간임대주택 입주시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사업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 사업개요>

- | | |
|---------------------------------------|--|
| ○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방, 고시원, 최저주거기준 미달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
| ○ 자격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70%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총자산가액 24,1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LH,SH) 및 민간임대주택 입주지원 - 보증금 지원: 입주시 보증금 무이자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50만원), SH(기금 250만원+HUG 50만원), 민간임대(최대 8천만원, 5천만원까지 무이자) - 이주비지원: 이사비 및 생필품비 지원(최대 40만원) |

- 이 사업은 '25년 9월 기준 347가구에 대한 8억 6천8백만원 규모의 융자가 이루어졌으며, '26년은 '25년과 같은 수준으로 640가

14) “전세의 월세화 가속…서울 가구, 소득 4분의 1을 월세로 부담”(조선일보, 2025.11.17.)

구에 대해 가구당 250만원¹⁵⁾ 응자지원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 사업 역시 정책 수요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응자' 사업 실적>

연도	계획	추진실적	
		가구수	지원금액
2023년	1,440가구	626가구	1,645백만원
2024년	1,500가구	630가구	1,575백만원
2025년(9월 기준)	640가구	347가구	868백만원

3. 종합의견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 임차료의 보조 또는 임대보증금 응자를 통해 직접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음.
- 「2032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전체 주거지원 필요 가구¹⁶⁾ 인 84만 6,123가구 중 이 기금의 지원 대상¹⁷⁾이 되는 비적정거처 거주 가구 또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가 약 75%(632,967가구)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15) SH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 시 보증금 300만원 중 50만원은 HUG에서 응자, 나머지 250만원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응자 지원됨

16) 「2032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다른 주거지원 필요가구의 구분 및 정의

구분	정의	선정기준
Group 1	물리적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거상향이 시급한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이외의 거처, (반)지하 옥탑 등 특정 종 거주 여부
Group 2	임차거주 가구 중 주거비 과부담·과밀주거 상황에 있는 가구	HCI, 최소 주거면적(서울시민 복지기준, 주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Group 3	임차거주 가구 중 공공 지원을 통해 자가구입이 가능한 가구	주택보유의식, 총부채상환비율

17) Group 1과 Group 2가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

<주거지원 필요가구 추정 결과>

구분	가구수	비고
서울시 전체 가구	4,046,799	-
분석 대상 가구	3,380,354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주거지원 정책대상 외
주거지원 필요가구	846,213	Group 1, 2, 3 전체
Group 1	319,632	비적정거처 거주 가구
Group 2	313,335	주거비 과부담 또는 과밀주거 가구
Group 3	21,3264	공공지원을 통한 자가마련 가능 가구

-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감소 추세이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6만가구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변화>



- 그럼에도, 2023년 이래로 주거지원계정의 운용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결산기준 여유자금예치액이 총 지출규모의 6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23년~'24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사업별 지출예산 및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	결산	계획	결산
서울형 주택바우처	28,800 (73.8%)	4,887 (13.2%)	7,800 (26.4%)	5,799 (17.8%)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7,200 (18.5%)	7,200 (19.4%)	7,350 (24.9%)	5,750 (17.6%)
전월세보증금 단기융자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1,400 (3.6%)	240 (0.6%)	1,000 (3.4%)	136 (0.4%)
여유자금 예치	1,616 (4.1%)	24,731 (66.7%)	13,363 (45.3%)	20,916 (64.2%)
합계	39,016 (100.0%)	37,059 (100.0%)	29,513 (100.0%)	32,601 (100.0%)

- 따라서, 기금운용관인 주택실은 이 기금 사업의 대상자를 재점검하고, 수요자가 희망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를 토대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기금운용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기존 사업 확대 또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반지하 특정바우처’ 사업은 침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거상향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정책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정책수혜자의 비자발적 주거이동으로 인해 실적이 감소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법조사관 조윤길	02-2180-8208

불입1**2026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수입계획: 19,587,945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5년 변경계획	'26년 운용계획	증감액 (증감율)	증감사유
계	28,587,641	19,587,945	△8,999,696 (△31.5%)	
공공예금 이자수입	557,654	441,424	△116,230 (△20.8%)	예치금액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7,033,778	4,750,000	△2,283,778 (△32.4%)	융자 지원기구 수 감소 추세에 따른 조정
그외수입	80,000	90,000	10,000 (12.5%)	과년도 환수금 증가 예정에 따른 조정
예치금회수	20,916,209	14,306,521	△6,609,688 (△31.6%)	

■ 지출계획: 19,587,945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5년 변경계획	'26년 운용계획	증감액 (증감율)	증감사유
계	28,587,641	19,587,945	△8,999,696 (△31.5%)	
서울형 주택바우처	8,631,120	7,215,480	△1,415,640 (△16.4%)	주거급여 수급 기준 완화로 주거급여 수급기구가 증가함에 따라 바우처 지원대상 기구 감소
공공부문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5,200,000	3,680,000	△1,520,000 (△29.2%)	최근 수년간 지원기구 수 감소 추세에 따른 조정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450,000	0	△450,000 (△100.0%)	사업 폐지로 0원으로 조정
여유자금 예치	14,306,521	8,692,465	△5,614,056 (△39.2%)	